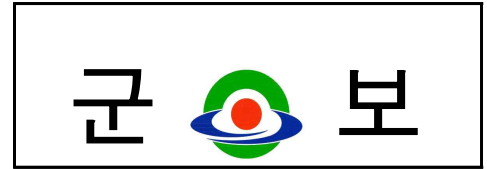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9호 2024. 9. 30.(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려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3호)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4호)
-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635호)
-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6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7호)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638호)

규 칙

-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41호)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42호)

공 고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395호)
- 예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4-1404호)
-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409호)
-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예천군곤충연구소 공고 제2024-17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3호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¹⁾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1)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휴가 도입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 확대(안 제11조제5항,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 1일 → 3일

나. 특별휴가 중 보육휴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6항)

-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연간 5일 범위 내 보육휴가 부여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4호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통해 경영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례보증 지원 한도 증액(안 제3조)
 - 2천만원 → 5천만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5호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예천군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중등 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 관내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예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5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6호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심의·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실과 소장”을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결정한다”를 “조정·심의·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책”을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24시간”을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인물을”을 “의안 자료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사문화된 위원회의 목적과 결정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위원회 목적 및 결정사항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당연직 위원 구성 개편(안 제2조제3항)

- 실과소장 → 본청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다. 회의운영 방식 일부 조정(안 제4조제3항)

- 의안 제출 시기 조정 : 24시간 전 제출 → 2일 전 제출
- 의안 배부 : 유인물 → 의안 자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7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15조제1항 관련)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결혼준비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 휴가 도입 등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여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21조)

-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사용기간 : 24개월 → 36개월

나. 보육휴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연간 5일 범위 내 보육휴가 부여

다. 공무원 연가일수 변경(안 별표 4)

-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5일 →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6일

라.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6)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 1일→3일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638호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예천군”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있을 때”를 각각 “있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제6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복지회관”을 각각 “복지관”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영기간 중”을 “운영기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군에”를 “예천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료”를 “이용료”로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과 불일치 하는 조문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예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예천군민

다.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변경(안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41호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으로, “구성·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

제5조의 제목 “(회의개최 등)”을 “(회의소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고”를 “매주 월요일에 소집하고”로, “개최한다”를 “소집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이견이 크게 제기된”

을 “이견(異見)이 있는”으로, “처리할”을 “심의·의결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소의 직근 하급자가”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으로, “후 의안표지(별지 제2호서식)”를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표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2개 이상의 실·과·소”를 “둘 이상의 부서”로, “실·과·소 간”을 “부서 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심의 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시행 '24. 7. 1.)되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구성 개편(안 제3조)

- 실·과·소장 → 본청의 국장 및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나. 불부합 법령 정비(안 제1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42호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복지회

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중 “예천군노인복지회관의 장(이하 “회관의 장”이라 한다)”을 “예천군 노인복지관의 장(이하 “복지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상담지도원”을 “사회복지사”로,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제4조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운영약정 체결)”을 “(위탁운영 약정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대하여 위탁운영 약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지회관의”를 “복지관의”로, “복지회관운영관련규정집”을 “복지관 운영 관련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기간)”을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8 : 30 ~ 17 : 30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장은 식당 및 이·미용실 이용자에 한하여”를 “복지관의 장은”으로, “사용료를”을 “이용료를”로, “사용료의”를 “이용료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할 때에”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상담, 사회교육 등 이용희망자는 내방 상담 후 회원가입 신청
제9조의 제목 “(상담사업)”을 “(상담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능회복사업)”을 “(기능회복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설치 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육강화”를 “근육강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경우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회교육사업)”을 “(사회교육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위하여 예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를 “위하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복지후생사업)”을 “(복지후생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식당, 이·미용실 및 샤워장 등을 설치”를 “식당 등을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할 수 있으며”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통해”를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로, “도모에”를 “도모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의탁”을 “복지관의 장은 무의탁”

으로, “자질향상에”를 “자질향상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관의 장은 생활·환경여건”을 “복지관의 장은 생활·환경 여건”으로, “대응하여 주간보호사업, 가정파견봉사사업 등”을 “대응하고,”로, “적극 개발하여”를 “개발하여”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 복지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음 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운영비) 군수는 복지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자 중에”를 “사람 중에서”로, “있고 임용결과”를 “있고, 임용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직원 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용 구분	기 본 시 설			
	부 속 시 설 장 비	조명, 방충시설, 냉·난방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주 의 사 항		복지관 시설물은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조작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 노인복지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정이유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

-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예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변경(안 제6조)

- 평일 08:30 ~ 17:30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관내 기관·민간단체 등과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예천군 지역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안 제2조)

-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나. 협의회 구성·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 회의 개최 : 정기회 - 연 2회(반기별 1회), 임시회 - 필요시
- 관계기관 협조, 수당 지급, 운영세칙 등 규정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s2ljh120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1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교육 주요 업무 계획(안) 심의
2. 교육복지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당면 현안 사업 및 의제 검토
4. 그 밖에 기관장, 민간단체의 장, 위원 등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구성은 예천군청 행정문화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행복과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교육기관의 교직원(교장, 교사 등)

3. 교육관련 분야 전문가

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되,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다.

예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30.

예 천 군 수

1. 목 적

- 예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내용 일반인 열람

2. 수립 주요 내용

- 수립범위 : 경상북도 예천군 전역(661.48km², 2읍 10면)
- 수립기간 : 2024년 ~ 2033년(10년)
- 주요내용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 대책 수립
 - 자연재해 저감 대책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

3. 관계 서류는 게재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

4.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장소 : 예천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
- 열람기간 : 2024. 09. 30. ~ 2024. 10. 30.(30일)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54-650-61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안 제3조)

- 예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
- 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안 제4조)
- 다.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 및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및 세부지침 수립, 사이버보안 교육,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등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홍보소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bybe304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홍보소통과

3) 팩스 : 054-650-6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과(전화: 054-650-60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감독)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준용)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
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예 천 군



1. 개최목적: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2.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4. 10. 14.(월) 14:00
- 장 소: 곤충연구소 연구동 2층 회의실

3. 특구 개요(당초)

- 특구명칭 : 예천 곤충산업특구
- 특구위치 :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일원
- 특구면적 : 243,836m²
- 시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사 업 비 : 572.9억원

- 특화사업 :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
 - 곤충생태 관찰체험지구 조성사업(세부사업 2개)
 - 산업곤충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세부사업 3개)
 - 산업곤충 소득자원화 사업(세부사업 4개)
 - 곤충관광자원화 사업(세부사업 4개)
- 특화사업자/주소 : 예천군수 김학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규제특례 : 4개
 - 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 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 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4. 변경 계획

- 사업기간 : (당초)2009년~2023년 → (변경)2009년~2026년(3년 연장)
- 사 업 비 : (당초)572.9억원 → (변경)867.9억원
- 특화사업 : (당초)특화사업(4), 세부사업(13) → (변경)특화사업(4), 세부사업(14)

5. 의견제출

- 예천 곤충산업특구 계획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 10. 17.(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예천군곤충연구소 시설운영팀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곤충연구소(☎054-650-6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예천 곤충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문·건의사항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폐회 후 제출해 주시거나, 공청회 개최 후 3일 이내 곤충연구소 시설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란

의견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